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해양수산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이 각각 개정(대통령령 제32475호, 2022. 2. 22, 공포·시행, 해양수산부령 제535호, 2022. 2. 22,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예정,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,

4) 법제처 심사 전

대통령령 제 호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의2·제5호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·고시 및 수입 유통이력 신고의 수리

5의2.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,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

5의3.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별 신고 절차, 수입 유통이력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

제28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「정부조직법」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8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① 해양수산물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 1. ~ 4. (생략) 5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수리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6. ~ 11. (생략) ② ~ ⑨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8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·고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수리 5의2.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,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 5의3.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별 신고 절차, 수입유통이력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 6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 ~ ⑨ (현행과 같음) 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「정부조직법」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그 내

	용을 고시해야 한다.
--	--------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449